

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. 6.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2000. 6. 23
- 다. 상 정 일 자 : 2000. 6. 23 (제8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- 가. 제안설명 : 재무과장 노 양 현
- 나. 개정사유
 -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되어 화순군세 감면조례 개정
- 다. 주요내용
 - 군세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제2항 본문중 상이등급 "1급내지 6급" 을 "7급"까지 확대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양정열)

- 국가유공자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는바,
- 그 범위를 7급까지 확대 적용키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사기 진작은 물론 생활편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.
- 상부의 개정 준칙안에 따라 입법 예고 및 조례, 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의 저촉여부 및 개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답변 요지

‘생 략’

5. 토론요지

‘생 략’

6. 심사결과

「원안가결」

첨부 :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 (국가유공자 및 그유족등에 대한 감면) 제2항 본문중 "6급"을 "7급"으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적용례)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.
- ③ (일반적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,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<p>제3조 (온천수의 공급) ①온천수의 공급은 온천법9이하 '법'이라 한다)</p> <p>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온천공 소유자와 협의하여 공동급수 하거나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급수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온천공소유자는 군수 또는 공동급수의 자격을 갖춘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 (온천수의 공급) ①온천수의 공급은 온천법(이하 '법'이라 한다)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급수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온천공소유자는 공동급수의 자격을 갖춘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.</p>